

## 부모님들께 전하는 내용

Manual of Requirements for Child Care Center (N.J.A.C. 10:122)의 규정에 따라, 뉴저지주의 모든 유치원/학원은 부모님의 학교를 방문할수 있는 권리, 주에서 요구하는 학교의 인가서 조건, 아동 학대/아동 방치에 대한 보고 조건 및 다른 child care center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그 학교를 재학중인 아이의 부모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는 위 규정에 따라 Bureau of Licensing in the Division of Youth and Family Services (DYFS)에서 제공하는 이 서류의 전문을 부모님들에게 전해져야 하며, 학교에 재학중인 아이의 모든 부모에게 이 서류의 전문을 받은것을 증명하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 \* \* \*

학교는 뉴저지 주 유치원/학원 인가법에 따라 Bureau of Licensing in the New Jersey Division of Youth and Family Services 에게서 인가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가서의 사본은 항상 학교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되어 있으니, 학교에 오실때에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인가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Manual of Requirements for Child Care Centers (유치원/학원 교범)에 따라야 합니다. 교범 사항은 학교생활 안전/학교 환경; 직원 채용; 직원/학생 감독; 학교 프로그램 및 활동내역과 학교 시설/설비; 보건; 음식과 영양;휴식과 낮잠; 부모/단체 사회 참여 활동; 서류 기록과 문서관리 외 여러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Manual of Requirement for Child Care Centers(M.R.C.C.C)를 항상 학교에 구비하여 관심이 있는 부모님이 언제든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Manual of Requirement for Child Care Center 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부모님들은 학교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서 Manual of Requirement for Child Care Centers 의 사본이 필요하시면 “Treasurer, State of New Jersey” 앞으로 \$5 의 수표를 만드셔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State of New Jersey,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Licensing Publication Fee  
PO Box 34399 Newark, New Jersey 07189-4399

M.R.C.C.C 에 제시된 문항들과 그에 따른 자세한 내용 및 학교의 프로그램과 그 취지 등에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학교 관계자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학교는 부모님과의 M.R.C.C.C 에 관한 문의 및 학교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 반갑게 맞을것입니다. 만약 학교가 M.R.C.C.C 의 법규사항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Bureau of Licensing 의 전화번호 1-877-667-9845 로 전화 문의/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의 보호자에 대한 (부모 혹은 부모님의 권한을 부여받은 보호자) 방침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아이들의 학교 출입에 관한 보호자 책임에 대해서 학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재학 중인 학생에 관한 약품관리와 건강보건에 관한 방침이 있어야 하며, 전염병에 대한 조치방법/방안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학교의 방침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의 정학/퇴학조치에 대한 자세한 방침이 있어야 하며, 이 방침에 대해 학교와 상담하셔서 학생이 학교에서 잘 생활할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학교에 구비되어 있는 Bureau of Licensing's Inspection/Violation Reports 의 사본을 읽어보실수 있습니다. 사본은 매년 주정부 인가서 발급 기관에서 행하는 정기 감사 후에 발급됩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 학교의 인가서에 대한 외부의 소송 및 조사가 있을경우 그에 따른 Bureau's

Complaint Investigation Summary Report 와 그 외 그 조사중에 있는 인가서에 따른 다른 기록들과 조사 결과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말씀하시면 부모님께서 읽어보실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학교는 DYFS 에서 행하는 모든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DYFS 의 감사는 학교내의 선생님, 관련 직원 및 학교 학생들과 면담 조사 할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 교육 방침 및 교육 철학에 대한 내용을 항상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 두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님이 읽어 보시기 원한다면 사본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사본을 받아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문의/상담 사항은 학교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학교에 있는 모든 시설 및 설비에 는 당국의 사용 허가가 있어야 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이름표가 붙여져 있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학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원장은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참관 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에게 그에 따른 여러가지 방법과 충분한 기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재학중인 학생의 부모님께서 는 언제든지 학교에 방문하실 수 있으며, 학교 관계자나 어느 직원에게 미리 연락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교는 부모님들의 방문을 반깁니다.

학교는 모든 야외활동, 소풍, 견학 등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부모님에게 알려야 하며, 위와 같은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은 부모님들 친필의 허가 및 동의서가 없이는 행해질 수 없습니다.

학교는 아래의 법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New Jersey Law Against Discrimination (LAD)

P.L. 1945, c. 169 (N.J.S.A 10:5-1 et seq.)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P.L. 101336 (42 U.S.C. 12101 et seq.)

누구든지 위 법규사항을 학교가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the New Jersey Department of Law 안에 Division on Civil Rights and Public Safety; 번호 (609) 292-4605 로 전화하셔서 LAD 에 대해 문의/신고 하실수 있으며 (TTY 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711 로 전화하셔서 New Jersey Relay Operator 에게 (609) 292-7701 로 연결 부탁하실수 있습니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전화 (800) 514-0301 (육성), (800) 514-0383 (TTY) 로 연락하셔서 ADA 에 관해 문의/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으로 가하는 체벌, 언어폭력, 조롱, 놀림, 협박, 모든 형태의 학대, 무관심, 내지는 노동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의 직원이던 아니던 그것을 Division of Youth and Family Services' Office of Child Abuse Control, toll-free 1-(800) 792-8610, 아니면 아무 DYFS District Office 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부모님은 아동학대와 무관심에 대한 모든 정보를 Community Education Office, Division of Youth and Family Services, PO Box 717, Trenton, New Jersey 08625-0717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